

13.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9년 4월 12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6일
- 상정일자 : 제2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문화복지위원회(2019년 4월 30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)

□ 제안이유

- 문화예술회관 공연관의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변경되는 부속설비에 대한 사용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표 중 부속설비의 변경사항 및 구성 등 정비(안 별표 1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(안 별표 1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창업)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별표 1에서 새로 구입한 악기(팀파니, 베이스드럼, 세트드럼, 신디사이저)와 신설된 연습실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하고, 신디사이저로 대체된 팔공홀 전자오르간과 수년 간 수요가 없는 달구벌홀 영상 녹음·녹화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
□ 검토결과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팔공홀 리모델링 과정에서 추가된 악기와 신설된 연습실에 대한 사용료를 새로 정하고, 다른 항목으로 대체되거나 수요가 없는 부속시설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사용료 항목 및 구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.
- 리모델링으로 인해 1년 5개월 정도의 휴관기간이 발생하는 바, 8월로 예정되어 있는 팔공홀의 재개관과 변경된 사용료 규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재개관 후 대관 및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예총 산하의 영세한 예술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최소화하여 공간임대가 가능한가?	예술단체는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.
팔공홀 리모델링이 끝나고 재개관하게 되면 사용료가 인상이 되는가?	사용료 인상 없이 기존 금액과 같음.

5. 토론요지

-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